#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2019년 7월 9일, 몬테비데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이라 한다)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이하 "우루과이"라 한다)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일반 규정

제 1 항 정 의

- 1. 이 행정약정과 관련하여,
  - 가.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의미한다.
  - 나. "약정"은 현재의 행정약정을 말한다.
- 2. 그 외 다른 용어들은 협정 제1조에서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 제 2 항 권한 있는 실무기관

- 1. 협정 제1조 제1항 라호에 언급된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 나. 우루과이에서는, 사회보장은행, 공증인사회보장기금, 대학교직원 연금 및 퇴직기금, 은행 연금 및 퇴직기금, 경찰 퇴직 및 연금기금, 그리고 군인 연금 및 퇴직기금을 말한다.

# 제 3 항 연락기관

- 1. 협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그 적용을 위한 연락기관은:
  -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 나. 우루과이에서는, 사회보장은행을 말한다.
- 2.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 제 2 부 적용 법령에 관한 규정

# 제 4 항 가입증명서

-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사용자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그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적용되는 기간을 설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그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강제적용에 관한 법령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 2. 이 항 제1호에 언급된 증명서는 다음 기관에서 발급된다:
  -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 나. 우루과이에서는, 사회보장은행
- 3. 이 항 제1호에 명시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이 증명서의 사본 1부를 해당 근로자 또는 자영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용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제공한다.

#### 제 3 부 급여에 관한 규정

### 제 5 항 청구서

협정에 따른 급여를 받기 위한 청구서는 양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의해 합의된 서식으로 제출된다.

#### 제 6 항 절차

- 1. 협정 제21조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 청구서가 제출된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서에 유용하고 급여 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모든 정보를 다른 쪽 체약 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제공한다.
- 2. 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제출되었던 급여 청구서를 접수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서의 처리를 완료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보유 증빙서류와 다른 모든 정보를 지체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제공한다.
- 3. 급여 청구서가 접수된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인과 그 또는 그녀의 가족에 관한 정보를 검증한다. 양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검증되는 증빙서류와 정보의 종류에 대해 합의한다.

#### 제 4 부 보칙 규정

### 제 7 항 정보

- 1. 행정약정 제3항 제2호에 따라 합의된 절차에 맞춰,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정의 이행을 목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청구 관련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 2. 협정 및 행정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연락기관은 전자 자료 교환을 위한 절차를 합의할 수 있다.

#### 제 8 항 통계의 교환

- 1. 연락기관은 각 체약 당사자가 협정에 따라 지급한 급여에 관한 통계를 매년 교환한다. 이 통계는 유형별 수급자의 수, 급여의 지급 총액 그리고 급여지급건수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 2. 행정약정 제4항에서 정한 대로 발급된 가입증명서의 수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한다.

### 제 9 항 행정협조

-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 평가와 관련될 수 있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료 정보 및 서류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 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의료 검진이 오직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요구되는 의료검진은 요청하는 실무기관의 요구와 비용으로 첫 번째 체약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수행한다. 양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사용을 위해 수행되는 의료검진 비용은 상환되지 않는다.
- 3. 다른 쪽 체약당사자 연락기관의 비용정산서가 접수되는 경우, 한쪽 체약 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이 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상환한다.
- 4. 각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사망, 주소 변동 및 혼인상태의 변동을 포함하여 관련 수급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 목록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제공한다. 세부적인 절차는 연락기관 간에 결정된다.

# 제 10 항 발 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하고, 협정이 유효하는 한 유효하다.

2021년 2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유효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서명되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